한국광산업진흥회 공고 제2022 - 57호

- 광융합산업 제품 시험·평가 및 인증획득 지원 -
광융합제품 시험평가 및 인증획득 참여기업 수시 모집공고

『2022년도 광융합산업 제품 시험·평가 및 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시모집』을 통해 광주지역 광융합 기업의 판로개척, 해외시장 진출,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 희망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8월 10일

한국광산업진흥회장

1. 모집개요

○ 신청 기간 : 수시모집

- 8. 10 ~ 16(7일간) 1차 수시모집 후 평가를 통해 기업 지원, 이후 신청 기업은 적격여부 평가 및 선착순 후순위를 부여하여 지원사업비 잔액 발생 시 지원 추진

○ 공고 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잔여사업비 소진시까지

※ 지원 포기 기업 발생시 사업비 소진시까지 모집·지원

○ 지원 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10. 31(월)까지

○ 지원 대상 : 광주소재 지역 광융합산업 관련 기업

○ 지원 조건 : **2022. 10. 31까지 시험 및 인증 완료가 가능한 광주 광융합산업체**

○ 지원 내용 : **광융합제품 국내외 인증지원, 성능시험지원(컨설팅 지원 제외)**

○ 신청 방법 : 팩스(062-605-9650) 또는 이메일(binnada@kapid.org)

※ 지원사업 신청 시 자사 양식을 활용한 지원사업 신청공문 제출 必 (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)

○ 접 수 처 : 한국광산업진흥회 사업운영부(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)

2. 사업목적

❍ 시험평가 및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해소

❍ 인증 획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 확보 도모

3. 지원대상

❍ 공고일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(본사 또는 공장)을 보유한 기업

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광융합제품(광융합 제품, 광의료·바이오 제품)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

4. 지원절차 및 선정기준

❍ 국내외 인증·성능시험 지원 절차

기업모집	⇒	신청서 접수	⇒	선정평가 위원회	⇒	협약 및 사업수행	⇒	결과 보고	⇒	지원금 지급
시험 및 인증획득 등 지원기업 모집		지원기업 사업신청서 접수 및 검토		모집기업 제품대상 선정평가 (제품 규격 및 효율 등)		선정기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		선정기업별 시험 및 인증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		선정기업 대상 시험성적서 발급 확인 후 지원금 지급

❍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: 접수 마감 이후 서면평가

위원회 구성	⇒	위원회 개최	⇒	평가 결과 안내	⇒	협약
관련 전문가 6명 내외로 구성		사업의 적합성, 사업수행 역량, 지역산업 기여 등의 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및 지원비 확정		평가결과를 선정기업에게 안내 (개별안내)		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

※ **평가 지표**

세부 항목		평가 지표
평가항목	**점 수**	
사업의 적합성	50	· 인증 제품의 기술 적정성 및 제품의 경쟁력 (40) · 사업화 여건과 신청분야의 적합성 및 명확성 (10)
사업수행 역량	40	· 인증신청 제품 기술력 보유현황(인증, 특허 등) (20) · 지원기업 매출 및 수출증대 효과 (10) · 기업의 재무의 안정성 및 기술 사업화의 시장경쟁력 (10)
지역산업 기여	10	· 지역산업 고용인력 창출방안 (10)
계	**100**	-

❍ 지원대상기업 선정 요건

- 광주지역을 소재지로 한 광융합산업체(공장, 연구소, 지사 등 포함)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광융합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- 국내외 시장진출에 대한 의지와 구체적인 전략은 갖춘 지역 내 기업
- 보유 제품 기술성과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, 해외 수출 실적 보유 기업 등

❍ 지원 분야

No	지원분야	지 원 내 용
1	광융합제품 국내외 인증지원	**【광통신·광응용 분야】** ▸ 광통신, 광응용 제품 및 시스템의 특성/신뢰성 시험지원, KS, 고효율에너지기자재, UL, CE 인증 등 국내외 인증 관련 시험 지원 - 수동형(Splitter, Connector등) 광부품 및 능동형(Tx/Rx, LD/PD등)광부품, 광센서(FBG Sensor 등), 광섬유레이져, 기타(광분배함, 함체 등) 광통신기기 및 관련제품의 특성시험 - Mechanical &Physical, Endurance 등 신뢰성시험 (UL, FCC, CSA, IC, NOM Mark, S-Mark, INMRTRO Mark, CE, ENEC, ATEX, CCC, CQC, PSE, VCCI, EMSD Approval, S-Mark, ISI-Mark, SNI Mark, Top Mark, ST Mark, Safety Mark, ICC Mark, Standard Mark, Safety Mark, BSMI Mark, Quality Mark, C-Tick, Gost-R Mark 등)
		【광조명 분야】 ▸ LED조명 제품의 특성/신뢰성 시험지원, 공동브랜드(LUXKO) KS, 고효율 에너지기자재, UL, CE 인증 등 국내외 인증 관련 시험지원 (EPC, NEP, NET, 조달우수제품, Q, KS, KC, K, KTL, 에너지효율인증, 기타 성능인증 등)
		【광의료·바이오 분야】 ▸ 광의료·바이오 관련 제품의 전기기계적 안전성, 전자파 안전성, 생물학적 안전성, 성능평가 시험인증 등 품목별 인허가를 위한 국내외시험인증지원 - 광의료·바이오 관련 제품, 임상시험 또는 전임상시험 등 인증 제반 필요항목 지원(FDA, KGMP, 임상시험 등)
2	광융합제품 국내외 성능시험 지원	**【광통신·광응용 분야】** ▸ 광통신부품 및 시스템의 특성 및 신뢰성시험 지원 (Mechanical &Physical, Endurance, Special 등)
		【광융합 분야】 ▸ 광학·열·전기성능시험, 신뢰성, 가속수명시험, 고장분석, 특성 측정 지원

- 제품 시험 인증 비용은 잔여사업비 내 지원가능 금액이며, 기업 당 지원금액은 최대 20,000천원 이내

※ 단, 당해년도 기 수혜 기업은 최대지원금에서 차감하여 지원

-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(V.A.T)는 지원신청 기업에서 부담 원칙

※ 지원신청 금액은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차등지급 가능

※ 기업신청금액 **작성 예시**

(단위 : 만원)

구 분	인증명칭 (신청인증)	인증품목	인증 절차시 총 소요금액 (VAT제외 견적금액)	지원금(최대) (VAT제외금액)	기업부담금(최소) (VAT 제외금액)
광융합제품 국내인증	KC	KAPID-001	200 (100%)	140 (70%)	60 (30%)

❍ 지원한도 및 기준

- 기업 당 지원금액은 최대 20,000천원 이내로 함.(당해년도 사업 지원비 총합지원액 기준)

※ 제품 시험·인증비 지원은 잔여사업비 내 지원 가능 금액으로 지원하며, 최대 20,000만원 이내

- 지원금은 총 소요금액(전체 인증·시험검사 비용)의 최대 70%까지이며, 기업부담금(총 소요비용의 30%이상) 및 발생되는 VAT는 기업에서 부담함.

ex) 'A'기업의 광조명(LED) 제품 국내인증 10건 지원신청 시(총 소요비용 28,571천원) 본회 지원금은 20,000천원(최대 70%까지), 기업 자부담금은 8,571천원(최소 30%이상)

※ 지원금 반환 및 인증 포기 업체는 향후 인증지원 기업 모집 시 페널티 적용

- 지원 신청 분야(광통신·광응용 제품, 광조명 제품, 광의료·바이오 제품) 등은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적격 여부를 판단 및 결정

※ 잔여사업비에 따라 지원제품의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.

※ 신청기업의 요청금액 대비 예산이 초과 될 경우 후순위 선정을 통해 반납금 발생 시 지원

❍ 사업수행 조건 및 지원금 지급 기준

- 선정기업은 총 소요비용(지원금(70%이하)+기업부담금(30%이상))에 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 必

※ 시험·인증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기업별 안내 및 협약 체결 일정을 서면으로 안내

- 선정된 기업은 반드시 협약기간 내에 지원신청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·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, 시험·인증 관련 증빙자료(접수증, 입금증, 수행결과보고서, 인증 및 시험 성적서 등) 검토 완료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원금 지급

- 인증·시험성적서 취득 기간이 협약일보다 장기간(시험 Fail, 자재수급의 어려움 등) 소요되는 경우, 본회에 협약기간 연장에 대한 공문 송부 必

※ 협약일 내 인증서 및 성적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본회에 협약기간 연장 승인必(공문)

- 협약 기간 내 시험·인증 취득이 불가능할 경우, 지원 신청한 품목에 대한 총 소요비용(지원 신청한 시험·인증 검사의 총 소요비용)은 기업에서 부담

- **협약기업 대상 지원제품에 대한 시험비 감소 및 증가, 파생, 모델명 변경 (시험기관 증빙자료 必) 등의 경우, 승인 필요**

- **지원신청 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차등지급 및 감액지원 가능**
- **사전제외(붙임 3 참조) 및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.**
-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은 분야의 경우 기타분야로 신청가능하며,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

○ 지원금 중간 정산 지급 절차

- 대 상 : 선정기업 대상 협약기간 내 국내외 광융합제품 시험·인증 조속 취득 완료 기업 또는 선정기업 대상 내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
- 중간정산 지급 절차 : ① 신청제품의 시험·인증서 취득 완료 → ②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수행결과보고서 작성(양식 송부) 제출 → ③ 지원금 지급 신청서 등 기타 증빙서류(접수증, 입금증, 시험·인증서 등) 검토(진흥회) → ④ 결격사유가 없을 시 지원금 지급

5. 사업기간 : 공고일부터 ~ 2022. 10. 31(월) 까지

○ 공고일로부터 시험·인증기관 접수 가능(단,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부적격 판정시 지원 불가)

6. 지원 제외대상(결격사유)

○ 사업기간 내 시험성적서, 시험인증 취득이 불가한 경우

○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
○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,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
○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○ 휴·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

○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

○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
○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7. 기타 유의사항

❍ 신청 취소 및 참여제한

-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, 지원 신청제품은 중복지원으로 지원금 지급 불가
- 중복지원 시, 본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, 향후 추진되는 지원사업에 2년간 참여를 제한
- 관련문서(첨부서류 등)의 허위제출을 통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액은 반납하여야 하고, 2년간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.
- 선정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취소

❍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환수

-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항을 위반한 경우
- 허위 계약체결 시(제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)
- 사업공고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
- 지원이 확정된 제품에 대해 타 정부기관 및 지자체,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을 신청한 경우
- 사업기간 중 화의,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관이 되는 경우
- 지원기간 내 기업부담금 미납 등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8. 접수 및 문의처

❍ 접수양식 : 한국광산업진흥회 홈페이지(www.kapid.org)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

❍ 접수방법 :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(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이내 도착분에 한함)

❍ 담 당 자 : 한국광산업진흥회 사업운영부 김수빈 전임

(Tel : 062-605-9632 / E-mail : binnada@kapid.org)

9. 제출서류

❍ 지원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(사업신청서 및 관련양식). 끝.